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검정업무 수행체계의 위탁 전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5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검정업무 수행체계의 위탁 전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1. 지진관측기관 지진관측소 및 지진관측장비 설치 현황	7
2. 최근 5년간 지진관측장비 검정 현황	7
3.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 대행 현황	8

I. 제안경위

2026년 6월 26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검정 업무 수행체계의 위탁 전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검정 업무의 수행방식을 현행 ‘대행’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검정업무의 위탁 등) ① ----- ----- -----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 -----위 탁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③ -----

현행	개정안
<u>지정된 기관</u>(이하 “<u>검정대행기관</u>”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u>검정대행기관</u>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u>검정대행기관</u>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u>검정대행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u>대행</u>한 경우 2. (생략) 3. 제6항에 따른 <u>지정 기준</u>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u>지정의 기준</u>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위탁을 받은 자</u>-----<u>검정기관</u>----- -----<u>검정기관</u>----- -----. ④ ----- -----<u>검정기관</u>----- ----- -----. ⑤ -----<u>검정기관</u>----- ----- -----. 1. ----- ----- ---<u>업무를 수행</u>----- 2. (현행과 같음) 3. 제1항-----<u>인력 및 설비요건</u>----- ⑥ -----<u>위탁의 절차</u>-----

현행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의3(<u>검정대행기관의 지정</u>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u>검정</u> <u>대행기관</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지정</u>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u>지정</u> 을 취소하여 야 한다.	제11조의3(<u>검정업무의 위탁</u> 취소 등) ① ----- <u>검정기관</u> -- ----- ----- <u>위탁</u> ----- ----- ----- ----- ----- ----- <u>위탁</u>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지정</u> 을 받은 경우	1. ----- ----- <u>위탁</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 1조의3에 따라 <u>검정대행기관의</u> <u>지정</u> 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27조의2(청문) ----- ----- <u>검정업무의 위</u> <u>탁</u> ----- ----- -----.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u>검정대행기관</u>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u>검정기관</u> -----

현행	개정안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현행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검정 관련 업무는 기상청장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신청한 기관중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대행기관으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정됨.

개정안은 현행 ‘대행1)’으로 수행되는 검정업무를 ‘위탁2)’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수행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검정·인증 업무는 대행보다 위탁이 적절하다는³⁾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기준에 부합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⁴⁾이 ‘검사·검정 등 국민의

1)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2)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3)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6, 법제처)> 515쪽
해당 업무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검정·인증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행정업무의 대행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검정·인증 등을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하고 해당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검정·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략)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사실상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검정기관의 위탁도 그간의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검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기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지진관측기관 지진관측소 및 지진관측장비 설치 현황 [2025.12.기준]

구 분	지진관측소(개소)	지진관측장비(대)			
		속도계	가속도계	기록계	합계
기상청	411	137	401	411	9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1	44	60	61	16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26	226	6	226	458
한국수자원공사	48	-	48	48	96
한국농어촌공사	74	-	74	74	148
한국전력공사	56	-	56	56	112
한국수력원자력	23	8	23	23	54
한국가스공사	173	-	173	173	3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	21	-	21	42
합계	1,093	436	841	1,093	2,370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지진관측장비 검정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실내 검정	기상청	73	53	71	32	41	270	54
	그 외	135	240	224	327	408	1,334	267
	합계	208	293	295	359	449	1,604	321
현장 검정	기상청	92	0	258	124	149	623	125
	그 외	57	480	137	635	502	1,811	362
	합계	149	480	395	759	651	2,434	487

※ 지진관측장비 검정 현황은 지진관측기관 외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한 수치임

참고자료 3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 대행 현황

□ 개요

- (경과) 「지진관측법」 시행('20. 11. 27.)에 따라 지진관측장비 검정(제11조) 및 검정대행기관 지정(제11조의2, 지정일: '20. 12. 10.)
- (대행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명) 국가표준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 (사업비) 928백만원 ('26년도 인건비 240백만원, 사업비 656백만원, 일반관리비 32백만원)
※ 연도별 대행역무사업 예산(최근 5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백만원)	475	600	680	710	829

□ 인력구성 및 사업내용

- 검정업무 인력(23명)

구분	실내검정(8명)		구분	현장검정(15명)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오창)		근무지	서울	상주		진주		
근무인원	현원	정원	근무인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8	8		3	4	3	4	6	7

□ 검정실적 및 수수료 현황 (기술원 입금확인→ 기상청 국고수납)

구분	검정 수량			검정 수수료(원)
	실내	현장	합계	
2021년	208	149	357	37,883,000
2022년	293	480	773	108,828,500
2023년	295	395	690	66,834,600
2024년	359	759	1,118	139,997,400
2025년	449	651	1,100	108,161,300
2026년 (‘26.6.30. 기준)	187	178	365	24,085,200

※ 기상청 장비는 검정수수료 면제